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
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용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 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20
------	-----

제출년월일 : 2010. 12. 6.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201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용진군 연평면 피격사건으로 사망한 민간인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위로금 지급 심의를 위해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조)
- 위로금 수령, 지급결정 및 통지, 청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8조)
-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로금과 기타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도록 함(부칙 제2조)

인천광역시 용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용진군 연평면에서 발생한 피격사건으로 사망한 민간인 유가족에 대하여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급함으로써 민간인의 희생을 위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과 장례비(이하 “위로금 등”이라 한다)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용진군연평면피격사건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망자 위로금등에 대한 심의·의결
2. 그 밖의 위로금등 지급과 관련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및 그 밖에 보상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피격사건 위로금등 지급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수령권자) 위로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제6조(지급결정) 위로금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지급결정 통지) 시장은 위로금등 지급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수령권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지급 청구) 위로금등 수령권자는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국외출타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로금등 지급 및 그 밖의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로금등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